

청주교육대학교 후생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규정

제정 2009. 10. 1. 제1232호
1차 개정 2020. 5. 11. 규칙 제152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내의 각종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학내 구성원들의 경제적, 문화적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주교육대학교 후생복지시설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“후생복지시설”이라 함은 직영 및 임대 운영되고 있는 식당, 매점, 자판기, 구내서점, 복사실, 피트니스센터 등을 말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<개정 2020.5.11.>

③ 위원은 교수 3인, 직원 4인(경리팀장 당연직 포함), 학생 3인(총학생회장 당연직 포함)을 학생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0.5.11.>

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학생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.<개정 2020.5.11.>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후생복지시설에 관한 제규정 제정 및 개폐
2.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
3.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학생 및 교직원 요구에 관한 사항
4. 기타 총장 및 위원장이 학생, 교직원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회의는 학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5. 11. 규칙 제1527호)

1.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